

# 1-1-1

## 농자재 반값 공급

사업 기간	임기내 완료☑ 임기후 계속□	사업 성격	신규사업☑ 계속사업□	예산 구분	예산사업☑ 비예산사업□	주관 부서	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	담당자	이병선 2374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

### 【사업목표】

-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 따라 기초 농자재 지원을 통하여 농업 경영 안정화와 농가 소득 보전 도모

## 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년 ~ 2026년(4년)
- 총사업비 : 34,606백만원 (도비 2,080 군비 15,223 자부담 17,303)
- 2024년 예산액 : 4,000백만원(도비 520, 군비 3,480)
  - 도비지원사업 : 1,733백만원(도비 520, 군비 1,213)
  - 군비자체사업 : 2,267백만원
- 사업량 : 2,798농가 / 4,431ha
- 사업비 : 7,930백만원(도비 520 군비 3,445 자부담 3,965)
- 지원한도 : 농가별 20백만원(보조 50%, 자부담 50%)
- 지원기준
  - 대상농가 : 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자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
  - 대상농지 : 1,000㎡ 이상 정선군 소재 농지(예외적 관외경작농지 포함)
  - 지원품목 : 기초농자재 13종(2024년 육묘, 종자, 씨비닐 추가)

## 2. 추진현황

- '23년 사업추진 실적 : 사업계획(6,606백만원)대비 약 80.2% 추진
  - 5,298백만원(도비 481 군비 2,168 자부담 2,649)
- 사업완료 및 평가회 개최 : '23. 12. 28
  - 군, 농업인단체, 농협, 정선군식물의회사회
  - '23년 사업 평가 및 '24년 사업계획 의견 수렴
- '24년 사업지침 수립 및 읍면시달 : '24. 1월
-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: '24. 3월
  - 2,798농가 4,431ha 7,930백만원

### 3. 문제점 및 대응방안

- 농업인의 보조사업 인식 부족 및 신청의 관행화로 추진 실적 저조
  - 영농계획과 관계없이 관행적 신청 후 미추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
  - 사업 신청시 고랭지 채소 계약재배 등 투자 비용의 변수 작용
- 사인(개인)간 임대차 계약 농지 신청 불가에 따른 민원
  - 농업분야 보조사업은 『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40조』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함
  - 농지법 부칙 제4조(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) 규정에 따라 '96년 이후 소유 농지에 대하여 사인 간 임대가 불가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함
  - 따라서, 불법농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

### 4. 추진계획

- 사업 변경 및 이의신청 : '24. 4. 19.까지
  - 면적·신청오류, 지원제외 대상자 이의신청 등
-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: '24. 5. 1.
- 농자재 공급 : '24. 11월말까지
- 사업정산 및 평가 : '24. 12월 중

### 5. 연도별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연도별					
			소계	'22	'23	'24	'25	'26
계	34,606		34,606		6,606	8,000	10,000	10,000
국 비								
도 비	2,080		2,080		520	520	520	520
군 비	15,223		15,223		2,783	3,480	4,480	4,480
기 타	17,303		17,303		3,303	4,000	5,000	5,000

※ 매년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비 증감 조정